

음성군 선거구조정에 따른 청원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

음성군 선거구조정에 따른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 청 원 자 :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374번지 성기타 등 704명
- 소개의원 : 이필용(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 접수일자 : 2010. 2. 2.
- 회부일자 : 2010. 2. 2.

2. 청원요지

- 지난 1월 19일자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로부터 요청한 음성군의 의견 제출은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한 부당한 의견 이였기에 금왕·생극·감곡 주민은 의견제출의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사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서를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을 의결로서 채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는 사례로 보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수렴자의 안일한 처리였으며 민의의 대변자인 군의회 의원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고 주장함.

-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투표 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을 주장함.
- 그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당초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 안인 아래의 의원수로 하여 주실 것을 바랍.
 - 음성군 가선거구 의원수 2명(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음성군 나선거구 의원수 3명(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 음성군 다선거구 의원수 2명(대소면, 삼성면)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금왕, 생극, 감곡 주민 다수가 청원한 음성군 선거구 조정은 현지 실정으로 보아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의회의 의안으로 채택하여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4. 검토의견

□ 청원 요지

-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선출위원 정수를 무시하고, 여론수렴과정이 부적절함.
- 현재 음성군 “가” 선거구의 경우 인구수는 29,850명, “나” 선거구 인구수는 36,434명으로 평균 인구수가 “가” 선거구의 경우 의원당 8,960명 “나”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18,217명으로 볼때 “나”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대비 상하 60%의 인구 편차 기준을 훨씬 넘어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 된다고 주장함
- 군의회의 여론 수렴시 해당 지역의 (“가” 선거구) 군의원으로서 출마할 사람들에게 의견을 수렴 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당연하고 뻔한 수렴이었다고 주장하며,
-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 처리하였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후 다른 사안도 전화로 의견을 들어 처리하는 일이 되풀이 된다면 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이 부적절하였고 의견수렴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함이나 그 명칭도는 구역의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을 의결로서 채택하여 제시하는 안건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사례를 보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함.

□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 음성군의회 의원의 선출은 9개면 89,716명으로 3개 선거구역에서 군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임.

- 가 선거구(음성군,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29,580명
- 나 선거구(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36,434명
- 다 선거구(대소면, 삼성면) 23,702명

○ 음성군의회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약칭함)가 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과 선출의원 정수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마련하되 동법 제26조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따라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군의회 최소정수는 8인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함.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원칙을 인구비례 30%, 읍·면·동 비율 70%로 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을 허용하는 편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기준을 정함.

- 공직선거법 제23조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충청북도 시군의회의 총131명중 인구비율과 읍·면·동비율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원정수를 8명으로 정하고, 음성군 선거구역별 명칭과 의원 정수도 동일 원칙에 따라 선출의원 정수를 산출하여 “가” 선거구 3명, “나” 선거구 2명, “다” 선거구 2명으로 의원 정수를 산출함.

선거구명	의원	의원 정수	산 출 내 역
“가”선거구	3	3	○ 계 : $2.87=(9.89+31.11)\times(7/100)$ - 인구비율 : $9.89=(29,580/89,716)\times 30\%$ - 읍면비율 : $31.11=(4/9)\times 70\%$
“나”선거구	2	3	○ 계 : $2.48=(12.18+23.33)\times(7/100)$ - 인구비율 : $12.18=(36,434/89,716)\times 30\%$ - 읍면비율 : $23.33=(3/9)\times 70\%$
“다”선거구	2	2	○ 계 : $1.64=(7.92+15.55)\times(7/100)$ - 인구비율 : $7.92=(23,702/89,716)\times 30\%$ - 읍면비율 : $15.55=(2/9)\times 70\%$

- 또한 선거권의 평등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한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12,816명을 기준으로 상하 60% 범위내에 있게 선거구역을 정하여 “가” 선거구 인구편차는 77%, “나” 선거구 142%, “다” 선거구 92%로 적정하게 산정 함.

지역구명칭	선거구역	인구수	의 원 1인당 인구수	인구편차
소계	3개 선거구	89,716	12,816	
“가”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땡동면	29,580	9,860	77%
“나”선거구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36,434	18,217	142%
“다”선거구	대소면, 삼성면	23,702	11,851	92%

- 청구인은 선거권 평등을 위하여 시·군 의원 정수를 인구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는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의원정수를 정한다는 규정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세부기준인 인구비율 30%, 읍·면·동비율 70%라는 산출기초에 의거 산출한 시·군의원 정수임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한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의 60%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의 의미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군의 경우 12,816명을 100%로 보고 상위 60% 20,505명, 하위 60% 5,126명 내에서 이루지면 되는 것임.

- 음성군의회에서 의견제시의 건을 전화, 면담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음성군의회 의견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지만, 이는 음성군의회에서 안건처리 절차는 음성군의회 규칙에 따라 의견이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음성군의회 내부절차까지 판단은 할 수 없음.